학회포상 규정

1992. 1. 23 제정
1992. 12. 21 개정
2002. 11. 16 개정
2007. 11. 10 학술상 시상 규정 전면 개정
2009. 2.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통 및 관련분야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제반 학회포상을 제정하고 그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정의) 학회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상
   - 저술부문 학술상(이하 "저술상"이라 한다): 독창적인 저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 논문부문 학술상(이하 "논문상"이라 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우수논문상: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로상: 본 학회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 기타 학회상: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학회상 심사는 학회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및 지회회원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상심사소위원회
   2) 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
   3) 공로상심사소위원회
   4) 기타 학회상 소위원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임기 1년으로 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사 및 시상관련 일반 사항)

1. 수상자가 없는 부문의 시상은 유보할 수 있다.
2. 학회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시상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심사내용은 일절 공표하지 않는다.
4.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학회상 시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학술상

제6조(학술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학술상의 수상자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의 공동수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수상자로 한다.
3. 학술상 시상 대상은 매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술상의 경우 해당되는 우수 저술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하나, 논문상은 매해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술상은 해당년도 제1차 정기총회 시에 시상한다.

제7조(학술상 시상대상 연구업적)

1. 저술상의 시상대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5년간에 발간된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 한다.
2. 논문상의 시상대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제8조(학술상 수상자의 자격)

1. 학술상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칙을 준수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2.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9조(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1.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대상기간 최근 만료일 이후부터 수시로 사무국에서 접수하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마감한다.
2. 본 학회에 가입한지 2년 경과한 정회원은 1편의 후보작을 시상부문별로 추천서 소정양식에 의해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추천자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저자가 논문을 학회에 제출할 때에 미리 논문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논문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사 대상 논문이 될 수 있다.

제10조(학술상 수상후보자 제출서류) 학술상의 수상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저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2부
3. 기타 자료

제11조(학술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학술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 학회 육운,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 4개 분야의 분과위원 중 각 1인과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2조(학술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년도 학술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4.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부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우수논문상

제13조(우수논문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학술발표회시 우수논문상의 시상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심사소위원회에서 적절한 수를 선정한다.
3. 우수논문상은 해당 학술발표회의 폐회식에서 시상한다.

제14조(우수논문상 수상자의 자격)
1.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15조(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각 학술발표회에서의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6조(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술발표회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제4장 공로상

제17조(공로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공로상의 시상여부와 수상자 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공로상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학술발표회시에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공로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1. 공로상 수상후보는 학회의 회원이 수시로 공로상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2. 추천이 없더라도 학회포상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상의 수상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심사 전까지 이력서 및 공적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로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공로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로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0조(공로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기타 학회상

제21조(기타 학회상) 기타 학회상은 학회회장단,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학회포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심사하여 시상하되,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상자의 선정, 심사 등의 관련 절차 및 운영은 공로상의 절차 및 운영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